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9. .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2213302	김현정의원	2025.9.26.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25.11.24.)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15636	이해식의원	2025.12.2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6.3.31.)

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9.1.)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6.9.3.)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어 업무 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소속기관장은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1항제1호 · 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u> ----- ----- ----- ----- ----- ⑤ <u>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u>